

의안번호	제 555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353회)

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7년 1월 16일

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1월 16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있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처 소속 수행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회 자체심사로 변경
-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심사위원회 인원수 조정

2. 주요내용

- 명칭 변경
 - “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”
→ “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”
- 공무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확대(안 제3조)
 - “충청북도의회의원”
→ “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수행공무원”
-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인원수 조정(안 제4조)
 - “의원 4명 이내” → “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이내”
 - “대학교수 등 5명 이내” → “대학교수 등 7명 이내”

3. 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여부 : 해당없음

○ 기타사항 : 별첨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”을 “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”으로 한다

제1조 중 “충청북도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수행공무원”으로 한다

제3조 중 “의원”을 “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수행공무원”으로 한다

제4조제1항 제1호 중 “의원 4명”을 “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예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충청북도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</u>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운영과 시행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허가권자)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<u>의원의</u>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기준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의원 4명</u> 이내 2. 대학교수와 시민단체·사회단체 등의 대표 <u>5명</u> 이내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<u>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수행공무원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3조(허가권자) ----- -----<u>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수행공무원</u>-----.</p> 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</u> 이내 2. 대학교수와 시민단체·사회단체 등의 대표 <u>7명</u> 이내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